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해설편 9p	문제-본문	20 이웃 2015.7.16. 2015도2347 전합 ㉔ (가) 대판 2018.12.28. 2014도17182 20 이웃 영역 수사와 공소>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해설 ㉔ (x)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사실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판 2007.6.24. 2006도2993). 오답 ㉔ (가) 대판 2021.09.09. 2019도5371 ㉔ (가) 대판 2007.3.29. 2005도332 ㉔ (가) 구 형법 제23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진상이 이루어지는 때'란, 첫째로 범죄에 대하여 실제, 성도 또는 형지를 하거나 범죄자의 사물에 관여가 되는 유정물을 실행하는 때이며 범죄의 완성을 포함하므로만 아니라 사실상 범죄가 완성된 때인 것은 상당한 관련 있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범죄에 대하여 요망의 형사의 판결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사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실관계상 완성되었다면 이른바 성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범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범죄진행에 자재에 의하여 당해 범죄가 범죄자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형이 없다(가) 대판 2018.12.15. 2014도1196 ㉔ (가) 대판 2008.06.27. 2005도4177 22 이웃 영역 수사와 공소>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해설 ㉔ (x) 공소가 제기된 상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중 일부에 있어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확정판결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확정판결로 처리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대판 1981.7.28. 81도1489). 오답 ㉔ (가) 대판 2016.10.29. 2015도9491 ㉔ (가) 대판 1996.10.23. 84도1983 ㉔ (가) 대판 2022.01.13. 2021도13108 판결문헌 최종요약서 제1회 9	㉔ (가) 대판 2020. 4. 29. 2017도13409
문제편 11p	문제-문항	21 이웃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㉔ 부당입찰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는 그 일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나 구체적으로 특정범죄가 일어난 그 전체 행위의 시간적 순서, 행위방법, 피해자나 상대, 행위결과, 행위결과, 또는 피해자의 합의 및 피해자의 상대행위를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나(대판 1990.6.22. 90도833). ㉔ (x) 부당입찰의 행위에서 공소제기 한 범죄사실과 추가된 범죄사실 사이에서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판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범죄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없이 이를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대판 2017.4.28. 2016도21342). 오답 ㉔ (가) 대판 2018.12.15. 2014도1196 ㉔ (가) 대판 2008.06.27. 2005도4177 22 이웃 영역 수사와 공소>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해설 ㉔ (x) 공소가 제기된 상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중 일부에 있어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확정판결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확정판결로 처리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대판 1981.7.28. 81도1489). 오답 ㉔ (가) 대판 2016.10.29. 2015도9491 ㉔ (가) 대판 1996.10.23. 84도1983 ㉔ (가) 대판 2022.01.13. 2021도13108 판결문헌 최종요약서 제1회 9	㉔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정 사유	해설 오류
		수정 사유	문제_문항오류

위치

오류유형

해설편

102p

정답

형사소송법

문제면 148p

제9회

경찰승진 최종모의고사

정답체크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문항별 정답체크

문항	영역	○	×	문항	영역	○	×
01	사법>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21	공판>공판절차		
02	사법>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22	공판>공판절차		
03	사법>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23	공판>공판절차		
04	사법>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24	공판>공판절차		
05	사법>소송절차와 소송주체			25	공판>공판절차		
06	수사와 공소>수사			26	공판>공판절차		
07	수사와 공소>수사			27	공판>공판절차		
08	수사와 공소>수사			28	공판>공판절차		
09	수사와 공소>수사			29	공판>공판절차		
10	수사와 공소>수사			30	공판>공판절차		
11	수사와 공소>공판절차와 공판절차			31	공판>공판절차		
12	수사와 공소>공판절차와 공판절차			32	공판>공판절차		
13	수사와 공소>공판절차와 공판절차			33	공판>공판절차		
14	수사와 공소>공판절차와 공판절차			34	공판>공판절차		
15	수사와 공소>공판절차와 공판절차			35	공판>재판		
16	수사와 공소>공판절차와 공판절차			36	상소와 비상구제절차>상소		
17	수사와 공소>공판절차와 공판절차			37	상소와 비상구제절차>상소		
18	수사와 공소>수사의 종료와 공소의 제기			38	상소와 비상구제절차>비상구제절차		
19	수사와 공소>수사의 종료와 공소의 제기			39	상소와 비상구제절차>특별항소		
20	공판>공판절차			40	상소와 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계				/14			
공판				/16			

102 경찰승진 10회 최종모의고사 형사소송법(400제)

22번 정답 : ①

수정 사유

정답 오류

위치

오류유형

해설편

108p

정답

인과 변호인이 이익을 제기하지 않고 변호에 응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것도 아니나(대판 2016.12.15. 2015도 3682).

21

영역 공판>공판절차

정답체크

① (○) 대판 1996.3.24. 89도114 전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수 개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간에 예비적·핵심적 기재를 명분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강인한 판례의 태도이다. 주지할 점은, 공소장의 예비적·핵심적 주기는 공소장정당성 일률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수 개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핵심적으로 추가할 수는 없다.

② (○) 대판 1981.6.9. 81도1299. 본위적 공소사실이 유죄인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이는 감시의 공소제기 취지대로 유죄판결이 나온 이상, 감사에게 형사처벌을 상소하여야 한다는 판사이다.

③ (○) 대판 1976.5.26. 76도1126. 예비적·핵심적 기재를 경우는 각 공소사실 상호간을 불기분의 관계로 본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상소권은 전부가 이양되므로, 상소심으로서의 불복하지 않던 부분에 심판대상으로 보아 파기가능하다.

④ (○) 예비적·핵심적으로 기재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추이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모든 본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한 판단을 요한다.

22

영역 공판>공판절차

정답체크

① (○) 대판 2000.4.11. 2000도565

② (×) 대판 1999.4.13. 99도375

③ (○) 대판 1977.4.26. 77도814

④ (×) 대판 2011.3.24. 2010도18103

23

영역 공판>공판절차

정답체크

① (×) 감시는 서부 등의 목적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0조5항 제2항).

② (○) 대판 2010.6.24. 2009도19757

③ (○) 대판 2017.12.26. 2015도16532

④ (○) 제260조5항 제2항

24

영역 공판>공판절차

정답체크

① (×)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감시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진다. 한편, 최종의견 진술을 기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관계의 다름이나 공판한 양자사항을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호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한다(대판 2018.03.29. 2018도327).

② (○) 대판 2013.7.26. 2013도2511

③ (○) 형사소송규칙 제323조의2 제1항

④ (○) 형사소송법 제323조의2 제1항

⑤ (○) 형사소송법 제323조의2 제1항

⑥ (○) 형사소송법 제323조의2 제1항

⑦ (○) 형사소송법 제323조의2 제1항

⑧ (○) 형사소송법 제323조의2 제1항

⑨ (○) 형사소송법 제323조의2 제1항

⑩ (○) 형사소송법 제323조의2 제1항

25

영역 공판>공판절차

정답체크

① (×) 헌재소송의 기판은 주심부에 나타나지 아니한 채로 소심부에 관하여 심판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헌재규칙 제76조 제4항).

22번 정답 : ①

수정 사유

정답 오류

22번 정답: ①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